

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

의안 번호	20
----------	----

제안연월일 : 2018년 7월 05일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주 문

-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8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으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, 「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 및 기간을 주문과 같이 결정함으로써 적절한 감사기간을 확보하고,
-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실시되는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등 안전심사시 감사결과 도출된 제반 문제점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것임.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첨부

□ 지방자치법

제41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39조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) ①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.

□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
제2조(감사) ① 인천광역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는 인천광역시(이하 "시"라 한다)와 인천광역시교육청(이하 "교육청"이라 한다)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(이하 "감사"라 한다)를 실시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.

② 감사는 매년 제2차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되,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(이하 "감사위원회"라 한다)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.